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전의안

의안 번호	1948
----------	------

제안일자 : 2010. 2. 10

제안자 : 문인수의원 외 12인

1. 제안 이유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
-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1.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정수(417명)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안산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음.
- 특히 안산시는 2005년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도 2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균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원 정수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요구

2. 주요내용

- 지난해 말 경기도 인구는 시·군의원 정수 확정 기준 년도였던 2005년에 비해 77만3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인구보다 약 120만 명이 더 많고, 읍·면·동 수도 116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서울특별시의 419명 보다 2명이 더 적게 책정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바
-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를 2010년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군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별표3의 내용은 조속히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정수를 기준의 불합리한 시·도별 총 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1.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정수(417명)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다른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인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는 2005년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2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 주민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안산의 인구 증가를 반영한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를 증원하여 2010. 6 .2. 지방선거에 적용 가능토록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난 1.28 경기도 시군의원및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안산시 의원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시·도별 총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한다.

2010. 2. .

안산시의회의원 일동